

IFRS Brief

IFRS Newsletter

COMMUNICATION
CUSTOMER
PROFITABILITY
PRODUCTION
MANAGEMENT
MONEY
BUSINESS
CORPORATION
SUCCESS
ENTERPRISE
COLLABORATION
PARTNER
OFFICE
SERVICE
EXCELLENCE
INDUSTRIAL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9년 9 · 10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1

I. [공개초안] IAS 12 '법인세'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이연법인세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2

I. 공시개선 - IAS 19 공시목적 - 확정급여제도
II. 주요재무제표 - 현금흐름표에서 이자와
배당의 분류

Global 동향 5

I. 2019년 7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FRS 실무적용 해설 7

K-IFRS 1102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 · 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토론회(Discussion Paper, "DP") 및 해석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초안] IAS 12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이연법인세

IASB는 2019년 7월 IAS 12 '법인세' 개정사항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리스(사용권자산/리스부채)나 복구의무(유형자산/복구충당부채)와 같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거래에서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최초인식면제 대상 거래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초안에는 단일거래에서 발생한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의 최초인식면제와 관련한 좁은 범위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IASB는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최초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인식하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식하도록 하였다¹.

[사례]

회사(리스이용자)는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자산과 리스 부채를 각각 CU100을 인식하였다. 해당 국가에서는 세무상으로 리스로 지급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래일의 세무상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0이다. 이에 따라 거래일에 사용권자산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CU100과 리스부채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이 발생하였다. 회사의 법인세율은 20%이다.

1 IAS 12 문단 15(b)(iii), 22A, 24(c)를 추가하고, 문단 22(c)를 개정함

회사는 거래일에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 중 CU40만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 CU12(=(CU100-CU40)X20%)을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제안된 개정사항은 개정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고,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해당 개정사항은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지를 검토하는 기준일을 거래 발생일이 아닌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로 선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경과규정을 선택하면 비교표시기간 개시일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이연법인세를 산정할 수 있고, 누적효과는 해당 시점 이익잉여금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IASB는 2019년 11월까지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2019년 8월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현재상황 | 진행계획 | |
|-----------------|---------------|-------------|--------|
| | | 6개월 내 | 6개월 이후 |
| 공개초안 | | | |
| 요율규제활동 | 분석 중 | 공개초안 발행 | |
| 공시개선 - 회계원칙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수렴된 의견 검토 | |
| 주요재무제표 | 분석 중 | 공개초안 발행 | |
| 보험계약 개정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수렴된 의견 검토 | |
| 토론서 | | | |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 분석 중 | | 토론서 발행 |
| 동적 위험관리 | 분석 중 | 주요 모형 발표 | |
| 영업권과 손상 | 분석 중 | 토론서 발행 | |
|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 분석 중 | 프로젝트의 방향 결정 | |

위의 주요 프로젝트 중 IASB의 7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공시개선 - [IAS 19] 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의 공시목적

IASB는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의 일환으로 개별 기준서 수준(targeted standards-level review of disclosures)에서 공시사항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IAS 19에 대한 공시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는 IFRS 13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1) 확정급여제도의 공시목적 개선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아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IAS 19에 포함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상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액의 구성내역
- ✓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성격
- ✓ 확정급여제도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특히 투자위험)의 성격과 범위
- ✓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및 연계된 위험
- ✓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하는 기대현금흐름 및 그러한 현금흐름의 성격
- ✓ 새로운 구성원들에게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지만 기존 확정급여제도 하의 구성원들에게는 계속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기간
- ✓ 확정급여채무 산출시 사용된 유의한 보험계리적 가정
- ✓ 보고기간 중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원인

(2) 확정급여제도 외 종업원급여의 공시목적 개선

확정기여제도와 단기종업원급여

IASB는 확정기여제도와 단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공시목적을 IAS 19에 포함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기타 종업원급여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아래 항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공시목적을 IAS 19에 포함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 ✓ 해고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성격
- ✓ 그러한 제도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

II. 주요재무제표 - [IAS 7] 현금흐름표: 이자와 배당금의 분류

IASB는 2017년 12월과 2019년 2월에 내린 '현금흐름표에서 이자와 배당금 분류'에 대한 잠정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잠정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IASB에서는 이 내용을 '주요 재무제표'에 대한 공개초안에 포함하고, 2019년 말까지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IASB는 현금흐름표에서 이자와 배당금의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표시 옵션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업은 각 현금흐름(배당 지급, 배당 수취, 이자 지급, 이자 수취)을 현금흐름표에서 단일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현금흐름표에서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의 관련 손익 분류와 일관될 것이다.

(1) 비금융회사

| 구분 | 현행 IAS 7 | IASB의 잠정 결정 |
|--------|------------|-------------|
| 이자 지급액 | 영업 or 재무활동 | 재무활동 |
| 배당 지급액 | 영업 or 재무활동 | 재무활동 |
| 이자 수취액 | 영업 or 투자활동 | 투자활동 |
| 배당 수취액 | 영업 or 투자활동 | 투자활동 |

(2)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경우, 상기 표의 현금흐름 분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명백하게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이 비금융회사에 적용하는 일괄 구분 방식에 따르면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현금흐름표에서 이자와 배당금을 분류할 때 다음의 적용지침을 따라야 한다.

- ① 관련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단일 항목에 포함했다면, 현금흐름표에서도 해당 항목에 표시(예: 이자 수익이 영업수익이라면 이자의 수취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
- ② 관련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둘 이상의 항목에 포함했다면, 현금흐름표에서 관련 현금흐름을 표시할 항목을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결정



I. 2019년 7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9년 7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AS 1]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 / 비유동 분류

IASB는 2015년 2월에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IAS 1 '재무제표 표시'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공개초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IFRS Brief 2019년 5·6월호 참고)

| 현행 IAS 1 | 공개초안 IAS 1 |
|---|---|
| <p>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참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 <p>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기간 말에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2R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을 분류함에 있어, 부채의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밖의 자산 또는 그 밖의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여 부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p> |

이번 7월 논의에서는 상기 개정문단 69(4)에서 설명하는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이 복합금융상품에서 부채와 구분하여 별도의 자본요소로 인식하는 계약상대방의 전환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개초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하는 다른 모든 조건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계약상대방의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전환권 분류에 따른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 문단 69(4) 적용 |
|--------------------------|--|-------------|
| 사례 1. | 별도의 지분상품으로 인식하는 보유자의 전환권 | |
| | <p>회사는 보고기간 후 5년 시점에 만기인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사채는 보유자에게 현금을 이전할 계약상 의무와 보유자가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확정 수량의 보통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구성됨. IAS 32 문단 28에 따라 회사는 전환사채를 복합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각각 회계처리함</p> | 비유동부채 |
| | <p>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전환권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채의 조건만으로 유동/비유동을 판단해야 하며 만기가 5년이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됨</p> | |

| 전환권 분류에 따른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 문단 69(4) 적용 |
|---|---|-------------|
| 사례 2. | 주채무의 일부로 인식하는 보유자의 전환권 | |
| | <p>모든 조건은 사례 1과 동일하나, 보유자는 확정 수량의 보통주가 아닌 100백만원과 같은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짐.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유자의 전환권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전환사채는 복합금융상품이 아니며 전체가 부채로 인식됨</p> | 유동부채 |
| <p>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전환권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침. 전환권을 고려하면 보유자는 언제든지 부채의 결제(자기지분상품의 이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됨</p> | | |
| 사례 3. | 부채로 분류되는 자기지분상품 결제 의무 | |
| | <p>회사는 계약상대방에게 6개월 뒤 100백만원과 같은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 금융상품을 발행함.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할 의무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채로 분류됨</p> | 유동부채 |
| <p>100만원과 같은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이전할 계약상 의무는 자기지분상품을 계약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함.² 부채의 결제(자기지분상품의 이전)가 12개월 이내에 요구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됨</p> | | |
| 사례 4. |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한 내재파생상품 | |
| | <p>모든 조건은 사례 1과 동일하나, 전환사채가 외화사채에 해당함. 전환사채는 보유자에게 외화 현금을 이전할 계약상 의무와 보유자가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확정 수량의 보통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구성됨. 전환권은 변동 가능한 금액의 현금을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다만 (금융상품 전체를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전환권은 주채무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함</p> | 유동부채 |
| <p>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전환권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침. 전환권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주계약인 사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고려해야 함. 전환권을 고려하면 보유자는 언제든지 부채의 결제(자기지분상품의 이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됨</p> | | |

2 IAS 32.21 ~ 예를 들면 (1) 100원과 같은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과 (2) 100은스의 금과 같은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의 경우, 이러한 계약은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여 해당 계약을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더라도 금융부채이다.

또한 IASB에서는 상기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①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를 적용하여 개정사항을 소급 적용함
- ② IFRS 최초 채택기업에 예외 규정을 제공하지 않음
- ③ 시행일 전에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기 적용한 사실을 공시하도록 함

II. 2019년 7월과 8월 IFR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9년 7월과 8월에 IFRS 해석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70〉

K-IFRS 1102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K-IFRS 1102 '주식기준보상'에서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 등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K-IFRS 1102 대상 거래인지 결정에 주의를 요하는 데,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특성상 다른 기준서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는 K-IFRS 1019 '종업원 급여'를 적용해야 하는지,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생기는 의무가 K-IFRS 1032 '금융상품: 표시' 또는 K-IFRS 1109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지 등이다. 이러한 기준서 적용범위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IFRS에서는 별도로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주식기준보상의 정의 충족 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는 지 결정함에 있어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K-IFRS 1102 주식기준보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거래들을 소개한다.

1. 주식기준보상거래 vs 주주와의 거래

K-IFRS 1102는 거래상대방이 지분상품보유자의 자격(즉, 주주)으로 참여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IFRS 1102.4] 예를 들어, 기업이 부여일 현재 특정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모든 주주에게 추가 지분을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 즉, 주주의 지위로 해당 거래에 참여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K-IFRS 1102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주이면서 동시에 종업원(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이 부여 받은 권리(예: 신주를 매입할 권리)가 다른 모든 주주와 동일한 권리인 경우만을 '주주와의 거래'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단독으로 권리를 부여받더라도 다른 주주가 지불하였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주주와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KPMG의 견해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K-IFRS 1102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 신주 매입 권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실현을 미래 용역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지
- ✓ 종업원이 아닌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재매입 약정이 있는지

사례 1. 공정가치로 거래된 주식기준보상

[Fact]

A사는 2019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주식옵션을 부여하였다. 주식옵션은 해당 종업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간 계속 근무해야 가득된다. 부여일에 종업원 100명은 옵션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옵션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종업원이 지불한 옵션프리미엄은 어떠한 경우 즉, 종업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 하더라도 환불되지 않고, 어떤 주식도 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득조건은 실질적이다.

[Analysis]

상기 거래는 종업원이 주식옵션의 공정가치를 지불해야 하더라도, 향후 2년간 A사에 계속 근무해야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미래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K-IFRS 1102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부여한 옵션의 공정가치가 수령한 옵션프리미엄과 동일하여 인식할 비용이 없을지라도 KPMG의 견해로는 K-IFRS 1102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례 2. 주주와의 거래

[Fact]

종업원들이 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한 비공개기업(privately held entity)의 경우, 종업원이 퇴사하면 정관에 의해 보유주식을 모두 회사에 매도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당초에 종업원이 해당 주식을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아닌 주주와의 거래에서 공정가치로 매수하였더라도 종업원은 퇴사시에 보유주식 전부를 회사에 매도해야 할 수 있다.

[Analysis]

KPMG의 견해로는 회사가 해당 주식의 재매입 시점에 공정가치를 지불해야 하고 종업원의 당초 주식매수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의 매도의무가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판단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주주와의 거래를 넘어서는 대가가 수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회사가 주식을 재매입할 의무는 K-IFRS 1032에 따라 분류되고 측정되어야 한다.

2. 주식기준보상거래 vs 종업원급여

용역제공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그 현금지급이 K-IFRS 1102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아니면 K-IFRS 1019 '종업원급여'를 적용한다.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한다면 주식기준보상거래이다.

가격 또는 가치의 근사값에 기초한 현금보상

현금지급액이 기업의 자기지분의 가격이나 가치에 기초하지 않고, 근사치로 측정된 값에 기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근사치로 측정된 값이 기업의 자기지분의 가격이나 가치를 나타내는지는 거래별로 판단이 필요하다.

사례 3. 근사값에 근거한 현금보상

[Fact]

비상장회사인 A는 종업원에게 회사의 순자산가치 즉, 자기지분가치의 증가분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nalysis]

해당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거래가 이익분배제도인지 주식기준보상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KPMG의 견해로는 순자산의 변동이 주로 영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나타내고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익분배제도이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K-IFRS 1019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

신규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은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과거주가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기업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데 이익을 기초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결제일에 현금보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기 위해 “EBITDA의 고정 배수(fixed multiple of EBITDA)”와 같은 미리 정해진 방법(formula)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보상은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이나 가치에 기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시장 배수(market multiple)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이다. 즉, 고정배수를 사용하면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이나 가치변동에 따라 보상액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보상은 주식기준 보상이 아니고 K-IFRS 1019 ‘종업원급여’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만일 순자산의 변동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을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순자산은 기업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반영할 것이고 이는 순자산이 사실상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KPMG의 견해로는 사례 3의 상황이 좀더 전형적인 상황일 것이고, 순자산의 변동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을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가격에 따른 현금보상 vs 주식가격에 기초한 현금보상

현금보상여부가 주식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급액이 주식가격에 기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가격이 다음 해까지 현재의 주식가격인 100원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현금을 100원 지급받고, 주식가격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현금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KPMG의 견해로는 비록 현금 지급 여부가 주식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지급액이 주식가격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는 주식기준보상이 아니고 K-IFRS 1019에 따른 종업원급여로 판단된다.

한편, 종업원이 주식가격의 60% 등 주식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 받는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을 금액이 주식가격에 기초하므로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한다.

사례 4.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현금보상

[Fact]

B사는 종업원에게 현금 보너스를 부여하였다.

보너스의 금액은 해당 연도 말에 달성된 주당주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Level 1: 주당주식이 10 미만인 경우 - 보너스 금액은 0

Level 2: 주당주식이 10과 12 사이인 경우 - 보너스 금액은 1,000

Level 3: 주당주식이 12 이상인 경우 - 보너스 금액은 1,500

[Analysis]

상기 사례에서 주당주식이 10과 12 사이에 있는 경우, 보너스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즉, 주당주식 구간이 넓어서 주가변동과 현금보상액 변동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 보상은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주식기준보상거래 vs 금융상품

의류제조기업이 의류제조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원단공급업체에게서 원단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원단을 인도받는 날 해당 기업 주식 1,000주의 가치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하자. 이 기업은 재화를 취득하고 자기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다. 이 거래는 재화를 제공받은 대가로 주당주식에 기초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정의를 충족한다. 게다가 해당 계약은 비금융항목인 원단을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업이 실제로 원단을 인도받아 의류제조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상기 거래와 같이 어떤 주식기준보상약정은 K-IFRS 1102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비록 K-IFRS 1102의 분류와 후속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금융상품기준서와 유사하더라도 두 기준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적용할 기준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형식상의 주식발행

주식발행 거래 그 자체가 주식기준보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주식의 발행이 단지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법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발행 그 자체는 주식기준보상이 아니다.

사례 5. 주식기준보상이 아닌 주식발행

[Fact]

D사는 주요 경영진에게 소액의 금액을 받고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 해당 상환우선주는 경영진이 퇴사하거나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에 당초 발행금액으로 상환할 것을 회사가 요구할 수 있다. 매년 D사 이익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배당이 약정되어 있으며, 배당으로 지급 되는 보통주에는 별도의 가독조건은 없다.

[Analysis]

이 사례에서 상환우선주는 보통주의 형태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는 주식기준보상 효과가 있는 법적인 방법을 나타낼 뿐이고, 해당 우선주는 그 자체로 주식기준보상이 아니다. 식별된 주식기준보상은 보통주로 지급되는 배당이고, 이 배당은 K-IFRS 1102에 따른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주식의 공정가치 매수

공정가치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에 주식기준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사례 6.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공정가치 매수

[Fact]

D사는 종업원들에게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현금(발행가격)을 받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보통주를 매도하였다.

- ✓ 종업원이 퇴사하면 D사는 해당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을 재매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 ✓ 재매입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명목 상, 주식은 5년의 근무용역 제공 시 가득된다.
- ✓ 가득된 주식(5년 경과 후)에 대한 재매입권의 행사가격은 행사일 현재 주식의 공정가치이다.
- ✓ 미가득된 주식(5년 경과 전)에 대한 재매입권의 행사가격은 발행가격에 연단리 6%를 가산한 금액과 행사일 현재 주식 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이다.

보통주 발행가격 및 주가는 다음과 같다.

- ✓ 발행가격 : 50원
- ✓ 3년 말 주가 : 67원
- ✓ 5년 말 주가 : 70원

만약 종업원이 3년 뒤 퇴사하면, D사는 주가인 67원이 아니라 59원(50 X 118%)에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이 5년 뒤 퇴사하면, D사는 주가인 70원에 재매입할 수 있다.

[Analysis]

사례에서 재매입권의 행사가격은 주식의 가득 여부(즉, 근무용역 제공)에 따라 달라진다. 종업원은 미가득 주식에 대한 행사가격 때문에 공정가치 상승 금액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주가의 하락 위험에는 모두 노출된다. 반면 가득 주식의 행사가격은 공정가치이므로 종업원이 공정가치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 근무용역 제공에 달려있다.

따라서 KPMG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주식기준보상이 존재한다. 재매입권의 행사가격이 공정가치와 동일하고 종업원이 주가 상승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D사에 5년의 근무용역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D사가 재매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D사가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한다.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박은숙 상무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

이지원 이사

T. (02)2112-7625

E. jeewonlee@kr.kpmg.com

한상현 이사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김응주 S.Manager

T. (02)2112-3227

E. eungjookim@kr.kpmg.com

양유정 S.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

국민경 Manager

T. (02)2112-6601

E. mkook1@kr.kpmg.com

이예슬 Manager

T. (02)2112-3144

E. yaeseullee@kr.kpmg.com

지가현 Manager

T. (02)2112-2733

E. gahyunji@kr.kpmg.com

오소라 Manager

T. (02)2112-6581

E. sorach@kr.kpmg.com

kpmg.com/kr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